

# 통합공공임대주택(청년)

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 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입니다

## 임대조건 등

- 임대기간      최장 30년
- 전용면적      85㎡ 이하

### 청년

-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사람
  - 공급신청자 (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세대를 말한다)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% (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%, 2명인 경우에는 160%로 한다)
  -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
  - 혼인중이 아닐것

### 기준중위소득 (2022년 기준)

가구원수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기준중위소득 75%	1,458,609원	2,445,063원	3,146,025원	3,840,810원
기준중위소득 100%	1,944,812원	3,260,085원	4,194,701원	5,121,080원
기준중위소득 150%	2,917,218원	4,890,127원	6,292,051원	7,681,620원

## 임대조건 및 신청절차

- 임대보증금      보증금 + 임대료 (시중시세의 35~90% 수준)  
※ 국토부고시 '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'에  
따르며, 평형별 차이가 있음
- 임대기간      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자격요건 충족(소득·자산)시  
재계약가능, 최장 30년
- 신청방법      인터넷 및 방문접수 (iH·LH 홈페이지)
- 문의            iH(1522-0072), LH(1600-1004)  
※ 20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  
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  
※ 세부내용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 
주시기 바랍니다.